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 양국 간의 보다 긴밀한 협력 증진을 위한 공동의 열망을 강조하며,
- 양국 간 상호이해를 제고하기 위하여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의 청년들이 취업의 경험을 가짐과 동시에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 각각의 문화와 생활양식에 대한 식견을 얻기 쉽게 하고자 하는 양국의 바람을 강조하고,
- 이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과 대한민국의 청년들이 각각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장기간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여행 경비 보조 목적 또는 취업과 관련된 보충 연수 목적으로 임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의사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공동으로 선언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국내법상 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각각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되는 법령에 따라서 2009년 4월 19일부터 아래 요건을 갖춘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발행일로부터 1년간 유효한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취업관광을 위한 복수사증(이하 “취업관광사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자 하는 의지를 표명한다.

가. 사증 신청시 나이가 십팔(18)세 이상 삼십(30)세 이하인 자

나. 부양가족을 동반하지 않은 자

- 다. 과거 관광취업사증을 발급받아 각각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한 사실이 없는 자
- 라.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발급한 유효한 여권과 귀국항공권 또는 그 항공권을 구입하기에 충분한 경비를 소지한 자
- 마. 관련 사증 신청비용을 지불한 자
- 바. 각각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초기 체류를 위해 충분한 비용을 소지한 자
- 사.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체류기간 중 특히 병원치료와 독일연방공화국 또는 대한민국으로의 후송 비용을 보장하는 의료보험과 책임보험을 포함한 상대국에서 유효한 보험에 가입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
- 아. 건강상태가 양호한 자

2. 대한민국 정부는 독일연방공화국 청년들이 독일연방공화국에 소재하는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기관에 대한민국 취업관광사증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지적한다.
3.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대한민국에 소재하는 독일연방공화국 대사관이나 영사기관에 독일연방공화국 취업관광사증 취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함을 지적한다.
4.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관광취업사증 소지자가 십이(12) 개월 동안 각각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체류하는 것을 허용하며, 동 관광목적의 체류기간 중 여행경비 보조를 위한 취업을 허용할 준비가 되어 있음을 표명한다.

5.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관광취업사증을 소지하고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하는 자가 각각 대한민국과 독일연방공화국에서 적용되는 법령을 존중하여야 함을 강조한다.
  
6.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각각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 내의 청소년, 문화 및 지역 단체들이 취업관광을 목적으로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한 대한민국 및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에게 적절한 상담편의를 제공하도록 장려한다는 의지를 표명한다.
  
7.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다음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같이한다.
  - 가. 대한민국 정부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각각 공공의 안전, 질서 및 보건을 포함한 공공 정책을 이유로 상기 조치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잠정적으로 중지할 수 있다.
  - 나. 대한민국 정부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각각 상기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 다. 대한민국 정부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는 각각
    - 1) 이러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잠정중지 또는
    - 2) 이러한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에 대한 어떠한 결정도 지체 없이, 그리고 해당 결정의 발효일로부터 최소 3월 이전에 외교경로를 통해 대한민국 정부 또는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에 통보한다.
  - 라. 상기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잠정중지, 또는 전부 또는 일부의 철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별도의 약정에 합의하지 않는 한, 중지 또는 철회 일에 이미 유효한 취업관광사증을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는 사증 만기일까지 대한민국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에 입국 또는 체류, 그리고 사증에 따른 취업이 허용된다.

다. 양국 정부 간 협의에 의하여 이 공동성명은 언제든지 서면 합의를 통해 변경되거나 보완될 수 있다.

이 공동성명은 한국어, 독일어 및 영어로 각 2 부씩 서명한다.

하노버, 2009년 4월 19일

독일연방공화국 정부를 대표하여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권터 글로저

권종락



MINISTRY OF FOREIGN AFFAIRS  
REPUBLIC OF KOREA

2024년 12월 30일, 서울

대한민국 외교부는 2009년 4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이라 한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공동성명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 (가)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가. 사증 신청시 나이가 최소 십팔(18)세 이상 최대 삼십사(34)세 이하인 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러한 개정이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이 개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각 국가의 가용 가능한 재정과 인력 그리고 법률과 규정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각서와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의 회답 각서가 공동서명의 개정을 확인하여, 2025년 1월 1일 발효하고 공동성명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30일, 서울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은 다음과 같은 대한민국 외교부의 2024년 12월 30일자 각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2009년 4월 19일 서명된 대한민국 국민의 독일 내 취업관광과 독일연방공화국 국민의 한국 내 취업관광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의 조치에 대한 공동성명(이하 “공동성명”이라 한다)에 대해서 언급하고, 대한민국 정부를 대표하여 공동성명에 대한 다음의 개정을 제안하는 영광을 가지는 바입니다.

제1항 (가)호는 다음과 같이 수정됩니다.

“가. 사증 신청시 나이가 최소 십팔(18)세 이상 최대 삼십사(34)세 이하인 자”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러한 개정이 어떠한 법적 의무도 창설하지 아니함을 확인합니다. 이 개정에 따른 모든 활동은 각 국가의 가용 가능한 재정과 인력 그리고 법률과 규정 내에서 이루어집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각서와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의 회답 각서가 공동서명의 개정을 확인하여, 2025년 1월 1일 발효하고 공동성명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제안하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이 기회를 빌려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은 독일연방공화국 정부가 위의 제안을 수락하며, 대한민국 외교부의 각서와 이에 대한 이 회답 각서가 공동성명 개정에 대한 합의를 구성하여, 2025년 1월 1일 발효하고 공동성명의 불가분의 일체로 여겨진다는 것을 알리는 영광을 또한 가지는 바입니다.

주한독일연방공화국대사관은 이 기회를 빌려 대한민국 외교부에 거듭 최고의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